

의안번호	2211918
의 퇴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5.09.10.
추 계 번호	25C419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일차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원, 2031년 5,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
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안 제7조·제8조)	400	50	50	50	50	600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医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활용계획 3. 일차의료기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차의료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일차의료 연구개발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제2항) ○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차의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1. 국민의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와 이용 형태 2. 일차의료 제공체계에 관한 사항 3. 일차의료기관 현황과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4. 일차의료 인력 현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그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 (일차의료 서비스 정보체계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현황, 일차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 (일차의료 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3조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1.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와 회송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간 교육·수련·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4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2. 성과 가산 수가 3.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4.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5조 (일차의료 연구개발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일차의료의 내용, 형태, 제공절차 등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2. 일차의료 교육 및 인력 양성 3. 일차의료 성과 분석 4.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6조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 기능 정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지역의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지역 일차의료기관 지원 2. 지역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원 3.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4. 일차의료 연구 지원 5. 일차의료에 관한 홍보와 정보 제공 6. 그 밖에 일차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제4항) ○ 제1항에 따른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18조 (건강 주치의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동 조문은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가 어려움
2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안 제10조(실태조사)	×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산출에 필요한 모집단, 조사 대상, 표본 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으며, 유사 실태조사 ¹⁾ 와의 통폐합 여부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5	안 제11조(일차의료 서비스 정보체계 구축·운영)	×	○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는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주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차의료나 주치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없으므로 일차의료기관과 서비스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기반하여 일차의료 모델이 확정된 후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의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음
6	안 제12조(일차의료 인력 양성)		
7	안 제13조(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8	안 제14조(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9	안 제15조(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10	안 제16조(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등)		
11	안 제17조(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1)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12	안 제18조(건강 주치의 제도)	○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동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후로는 건강보험 재정(수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건강 주치의 제도의 경우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과 같이 일부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재정(수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각 조문별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제8조)
 -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각각 4억

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²⁾)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배정된 바 있음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7년(제1차)에 발주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듬해인 2028년부터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연구용역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일차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원, 2031년 5,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7조)	400	—	—	—	—	400	8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8조)	—	50	50	50	50	200	40
합 계	400	50	50	50	50	600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수가 사업을 포괄한다는 점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종합하여 유사 사례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선정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